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남인순·서영석·이수진
전진숙·정태호·정춘생
김 윤·임오경·김남근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「발명진흥법」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,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10 등).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제10조의9까지에서”를 “제10조의10까지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의10의 제목 중 “설치”를 “지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”를 “지정 절차, 그 밖에 인증운영기관 운영에”로 한다.

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5. 제10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

6. 제10조의5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

③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운영기관이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

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운영기관이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 기간만큼 인증운영기관의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3항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증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0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5부터 <u>제10조의9까지에서</u> “보건복지부장관등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“인증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	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10조의10까지에</u> <u>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10(인증운영기관의 <u>설치</u>)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0조의10(인증운영기관의 <u>지정</u>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제10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

<신 설>

5. (생 략)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
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그
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
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
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효기간 연장

6. 제10조의5에 따른 인증의 사
후관리

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 제>

③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
에 따라 지정한 인증운영기관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운
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
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
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
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

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
에 따라 지정한 인증운영기관
이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인
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는 경
우 그 정지 기간만큼 인증운영

<u><신 설></u>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<u>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	<u>기관의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</u>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3항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<u>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⑥ ----- <u>---지정 절차, 그 밖에 인증운영기관 운영에</u>----- -----.
---	--